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386
----------	-------

발의연월일 : 2026. 8. 3.

발 의 자 : 장종태 · 이재관 · 전현희

김남준 · 소병훈 · 염태영

김영배 · 정준호 · 장경태

맹성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이 유사하고 각 공사현장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인 건설공사에 한정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발주하면서 과업기간을 공사기간보다 짧게 정하거나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 발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의 통합발주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

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및 제4항 등).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4항”을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5호가목 중 “제39조제4항”을 “제39조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발주하는 여러 건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은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88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 중 “제39조제4항”을 각각 “제39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4 각 목 외의 부분 중 “제39조제6항”을 “제39조제8항”으로 한다.

제91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3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①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39조제4항 후단에 따라 같은 항 전단에 따른 보고서(이하 “건설사업관리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 다. (생략)	3의2. 제39조제6항----- ----- ----- ----- ----- -----가. ~ 다. (현행과 같음)
4. ~ 7. (생략)	4. ~ 7.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생략)	제31조(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	② ----- ----- ----- -----

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9조 제4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거나 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해당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것을 알고도 제출한 경우

나. ~ 사. (생략)

6.·7. (생략)

③ ~ ⑤ (생략)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생략)

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법인인 건설엔지니어링

-----.

1. ~ 4. (현행과 같음)

5. -----

가. -----

-----제39조

제6항-----

나. ~ 사. (현행과 같음)

6.·7.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건설사업관리 등의 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

사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관리
(시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관
리 실태의 확인, 설계변경에 관
한 사항의 확인, 준공검사 등
발주청의 감독 권한대행 업무
를 포함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③ (생략)

<신설>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

---.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의
기간은 건설공사의 시공기간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하여
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발주청은 발주하는 여러 건
의 건설공사가 공종(工種)이 유
사하고 공사현장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청
은 공사현장 간 직선거리가 20
킬로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4항-----

를 수행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 검사 및 시험 등 세부적인 업무내용을 포함한 보고서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사업관리보고서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의 소속 건설기술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인이 작성하여야 한다.

⑤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인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다.

1. ~ 5. (생략)

⑥ (생략)

⑦ 건설사업관리의 세부 업무
내용 및 업무 범위 등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illegible]

⑦

제4항

1. ~ 5. (현행과 같음)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⑨

제4항

제88조(벌칙) -----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생략)

1의2. 제3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후단에 따라 건설기술인이 작성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거짓으로 수정하여 제출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1의3. 제3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건설기술인

1의4. 고의로 제39조제6항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게을리하여 교량, 터널,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주요 부분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을 초래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기술인
가. ~ 바. (생략)

2. ~ 10. (생략)

-----.

1. (현행과 같음)

1의2. 제39조제6항-----

1의3. 제39조제6항-----

1의4. ----- 제39조제8항-----

가. ~ 바. (현행과 같음)

2. ~ 10. (현행과 같음)

제9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1. ~ 3. (생 략) ② ~ ④ (생 략)	제91조(과태료) ① ----- ----- ----- -----. 1. 제39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39조제5항을 위반하여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통합하여 발주한 자 3. ~ 5.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